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과 능력도 함께 강화돼야”

제13회 산업보건학술제



조기훈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24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13회 산업보건학술제’를 열었다.

이번 산업보건학술제에서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령에 포함된 직업성질환의 실태 및 기업의 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역할과 사업장의 보건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주요 내용 해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법인중과실치사법의 입법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으나



영국의 법률과 달리 책임추궁의 대상이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으로 삼았으며, 처벌법요건도 영국의 포괄적 중과실 책임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나열하는 고의범 처벌방식이라고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한 부분은 제2조에 별표1을 통해서 질병 발생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24가지를 정하였고, 시행령 제4조에 모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하였는데 이 조항이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범위, 경영책임자의 범위, 관리 미흡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은 향후 해석의 논란이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윤석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기관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그동안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기술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제는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등 관리상의 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준비를 갖춘 기관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5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와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령에 포함된 직업성질환의 실태 및 기업의 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역할과 사업장의 보건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질병자의 질병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질병과 부상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규율대상의 범위가 좁은 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부상, 질병도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진우 센터장은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규정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일상적 산업안전보건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직업성질병 예방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전문관리 기관의 점검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극 실행하도록 하고 원하청 및 특고 노동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보건관리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활성화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유면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강충원 센터장은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보건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산업보건서비스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업병 예방은 직업병의 정확한 규모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사업장 보건관리는 업무상질병의 예방이라는 선택적인 고위험 접근 전략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수준을 높이는 보편적 접근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산안법의 준수가 목적인 패러다임에서 현장의 필요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뀌어야

직업성질병 예방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전문관리
기관의 점검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극
실행하도록 하고
원하청 및 특고
노동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보건관리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명수당, 산재인정 등 직업병으로부터 일반질환의 보편적 보장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노동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영수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해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로 정착시켜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헌기 산업보건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보건협회는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매뉴얼 구축을 비롯해 안전보건경영 진단 및 안전문화 구축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할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과 능력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해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